

[별표 3] <개정 2015.1.6.>

**소방용품**(제6조 관련)

1.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
  - 가.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(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)
  - 나.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
  - 다.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, 송수구, 관창(菅槍), 소방호스, 스프링클러헤드, 기동용 수압개폐장치,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
2.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
  - 가.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
  - 나.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, 수신기, 중계기, 감지기 및 음향장치(경종만 해당한다)
3.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
  - 가. 피난사다리, 구조대, 완강기(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)
  - 나. 공기호흡기(충전기를 포함한다)
  - 다. 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,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
4.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
  - 가. 소화약제(별표 1 제1호나목2)와 3)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)부터 8)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)
  - 나. 방염제(방염액·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)
5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